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1.7.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정식 우리말 명칭은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로 칭함)로 하고 정식 영문 명칭은 “Search Committee for POSTECH President”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법인’이라 칭함) “총장선임규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에서 새로운 총장의 선임을 결정할 때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칭함)에 구성되는 총추위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업무) 총추위는 교내외의 모든 추천자료나 의견수렴의 유일한 창구이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법인의 “총장선임위원회”(이하 ‘총선위’라 칭함)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내외를 망라하여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총장 후보자 3명 내지 5명을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 2 장 위원회

제4조(구성 및 선출) ① 법인의 총장선임규정 12조에 근거하여 총추위는 대학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② 각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로 칭함)에서 추천한 총추위 위원 후보(이하 ‘위원 후보’로 칭함)를 대상으로 재직중인 전임교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학과가 추천하는 위원 후보의 수는 학과 평의원 수 이하로 한다.

④ 학과에서 추천하는 위원 후보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총추위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수평의회에서 선임한다.

⑥ 투표는 7명에 대한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되 학과별로 선출된 위원 후보 중 1명에 대하여 투표한다. 단, 선출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교수는 본인이 속한 학과의 위원 후보에 투표할 수 없다.

⑦ 총추위 위원은 제2항의 위원 후보 중 득표수 다수의 순으로 7명을 선출하되 동일

학과 소속 위원이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인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수로
위원 정원을 넘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⑧ 총추위 위원은 총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⑨ 유고 시를 대비하여 차점자 순으로 총추위 예비위원을 선정한다.

⑩ 선출된 교수는 비밀보장 및 공정성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원직을
수락하게 된다.

제5조(기능 및 활동기간) ① 총추위는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전권을 법인 이사회와
전체 교수들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 위원회이다.

② 총추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시작하여 법인 이사회에서 차기총장의 선임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직 승계) 선출된 위원의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사퇴할 경우
제4조에서 정한 후보 순으로 위원직을 승계한다. 단, 총장후보자 추천기한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원) ① 총추위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총추위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총추위를 대표한다.

③ 총추위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① 총추위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은 위원 개인자격으로 발표 또는 누설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공개가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발표한다.

② 각 위원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총추위 위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은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총추위에 공개하
여야 한다.

④ 어느 위원이든 활동 중에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
될 경우 총추위의 결의에 따라 위원직을 해촉시킬 수 있다.

⑤ 각 위원은 총추위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추위 활동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신분보장) 총추위 위원은 총추위 활동으로 기인하여 차후 대학 내에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으
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모든 안건은 재적 위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8조 제3항에 의거한
총추위 위원의 해촉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전원일치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유고 또는 사퇴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적 위원수로 간주한다.

⑤ 위원장도 투표권을 가진다.

⑥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의사진행을 대행한다.

제 3 장 활 동

제11조(예산 및 사무실) ① 총추위 활동에 관한 예산은 법인에 요청하여 지원받는다.

② 총추위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및 필요 기기는 대학에 요청하여 지원받는다.

③ 대학 및 법인은 총추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대외활동) ① 총추위는 구성 즉시 국내외에 총장 초빙에 관한 공고를 낸다.

② 총추위는 활동기간 중 대학 구성원 및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총추위는 법인의 총선위와 적극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한다.

제13조(중간보고) ① 총추위는 활동기간 동안 필요시 중간보고를 대학 구성원에게 할 수 있다.

② 피추천인의 명단과 인적사항은 밝히지 아니한다.

제 4 장 후보추천

제14조(추천경과보고서) ① 총추위는 총장 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추천경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인 이사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② 총추위는 법인 총선위에서 경과보고를 한다.

③ 추천경과보고서에 추천한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자료보안) ① 총추위에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모든 안적자료는 최종보고서 작성 후 총추위 활동기간 안에 파기한다.

③ 총추위는 총추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총추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천경과보고서와 총추위 활동보고서는 대학에서 기밀문서로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7월 10 일부로 제정, 시행한다.